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27
----------	-------

발의연월일 : 2024. 1. 30.

발 의 자 : 윤창현 · 이 용 · 송석준
윤주경 · 이종성 · 김승수
윤한홍 · 김희곤 · 성일종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영세한(국세청 인정 간이과세자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한도와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해 근무경험이 짧거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금융소비자가 제44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거나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청약철회·계약해지로 원상이 회복되거나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조제7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거나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금융소비자가 제44조에 따 라 손해를 배상받거나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해지로 원상이 회복되거나 기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 2조제7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금융상 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하 여는 제1항제2호의 과태료 부 과를 면제하거나 1천만원 이내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u><신 설></u>	⑥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회에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⑦ ----- 제6항----- ----- ----- -----.